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6. 주철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2024. 8. 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8. 23.)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근거로 경로당이 지원받는

국비는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한정되고, 기타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치부되어 왔음.

그러나 경로당에서 통상 노인 대상 식사제공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가가 양곡비만을 지원하다 보니 양곡 외 부식에 필요한 식자재와 이를 조리하는 인력에 드는 비용은 오롯이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어 경로당이 받는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임.

일례로 지자체별 경로당 보조금은 충북 단양군의 경우 월 11만 5천 원인 반면 경기 부천시의 경우 최소 월 37만 원으로 나타남. 이처럼 경로당의 운영 안정성이 그 소재지의 재정 역량에 좌우됨에 따라, 지역별 노인의 복지수준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경로당의 식사제공사업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식사 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임. 아울러 고령화사회는 도·농을 가리지 않는 현상임을 감안하면, 국가의 경로당 지원폭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노인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은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들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노인공동체의 건강한 교류의 장인 경

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들어선 국가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현행법상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 제한된 범위의 경로당 지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고령화로 경로당 이용 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어 부식구입비에 사용이 가능함.

###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